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6. 1.

(주)동아닷컴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 (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6년 1월 28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(주)동아닷컴
대표자	김승환, 신석호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엠엘비파크 / 10만명 이상
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	비공개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	이오우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1)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

○ 23년도 이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후 업데이트 중

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〉
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

동아닷컴(엠엘비파크)

1. 일반현황(2025년 11월 기준)

법인명	동아닷컴
대표자	김승환, 신석호
매출액(2024년)	비공개
불법촬영물 유통책임자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 이수 책임자
해당서비스/일평균이용자	엠엘비파크/ 10만 명 이상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1)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 공지

로그아웃 [담당자] 마이페이지

MLBPARK ML타운 한국야구타운 BULLPEN 뉴스 건의사항 더그아웃 마이리

강력한 여전사의 등장! 신규 클로드 실드

[공지] 이용자 필독 사항 (불법촬영물 게재 및 유통 관련) 담당자

글번호 20220517000001035 | 2022-05-17 17:42 | 2022-09-02 10:44 IP ***.***.***.*** 추천 16 조회 92,182 리플 0

1. 당사는 최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이 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

2.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"전기통신사업법" 제22조의 5 제1 항에 따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

3. 불법촬영물 유통 시 "성폭력처벌법" 제 14조 "청소년성보호법"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누구든지 불법촬영물을 확인하는 즉시 mlbpark@donga.com 으로 메일 혹은 건의사항 게시판에 긴급신고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

공유 스크랩 수정 삭제 추천

2)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

○ 신고기능 마련

- 온라인 신고 페이지 : <https://mlbpark.donga.com/mp/illegal.php>

· PC

MLBPARK

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안내

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, 엠엘비파크는 '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에 따라 정보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.

"성폭력처벌법" 제 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 시 7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" 제 11조에 따라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, 구입·소지·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 제 14조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제작·편집·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엠엘비파크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,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신 후 mlbpark@donga.com 로 메일 보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[\[서식 다운로드\]](#)

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,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불법촬영물
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

허위영상물
① 유통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 합성 또는 가공한 것
②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이용약관 | 개인정보처리방침 | Copyright by dongA.com

· MOBILE

○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

- 접수처 : 엠엘비파크 대표메일
- 엠엘비파크 대표메일로 접수(mlbpark@donga.com)

엠엘비파크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,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신 후 mlbpark@donga.com 로 메일 보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[서식 다운로드]

3)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

○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

-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
-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경고문구 표출과 함께 송출 제한

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'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' 시행을 위해 검색이 제한된 키워드입니다.

"성폭력처벌법" 제 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 시 7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" 제 11조에 따라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, 구입·소지·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 제 14조에 따라 허위영상을 제작·편집·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제목+본문 ▾ 물카



검색

이전게시판 1 2

○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

- 연관검색어 기능 미지원
- 연관검색어 기능 미지원
- 검색어 노출 제한
- PC

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'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' 시행을 위해 검색이 제한된 키워드입니다. 해당 법률의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"성폭력처벌법" 제 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 시 7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" 제 11조에 따라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할

경우 3년 이상의 징역, 구입·소지·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” 제 14조에 따라 허위영상을 제작·편집·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제목+본문 ▼ 몰카



검색

이전게시판 1 2

· MOBILE

4)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
○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

순번	서비스명	필터링 적용	적용 기술	미적용 사유
1	공공 DNA DB	유	공공 DNA DB	

5)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

○ 사전경고 조치 시행

- 공지를 통한 사전경고 조치
- 23년도 이래 공지사항을 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 중

[공지] 이용자 필독 사항 (불법촬영물 게재 및 유포 관련)

 **담당자** 

글번호 202302230000001158 | 2023-02-23 09:45 | 2024-01-25 09:38 IP ****,****,****,**** 추천 0 조회 1,903 리플 0

1. 애플은 최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이 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

2.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"전기통신사업법" 제22조의 5 제1 항에 따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

3. 불법촬영물 유통 시 "성폭력처벌법" 제 14조 "청소년성보호법"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누구든지 불법촬영물을 확인하는 즉시 mlbpark@donga.com 으로 메일 혹은 건의사항 게시판에 긴급신고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정의

1. 불법촬영물: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

2. 허위영상물: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 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,영상물 음성물

3. 아동 청소년 성적취물: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

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, 아래 링크에 포함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해당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서식 다운로드

○ 로그기록 보관

- 로그 기록 3년간 보관
-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 추정되는 콘텐츠(이미지,영상) 는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 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 관리 중에 있음

6)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

- 푸터에 불법촬영물유통신고 메뉴를 넣어 사이트 어디서든 해당 메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.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<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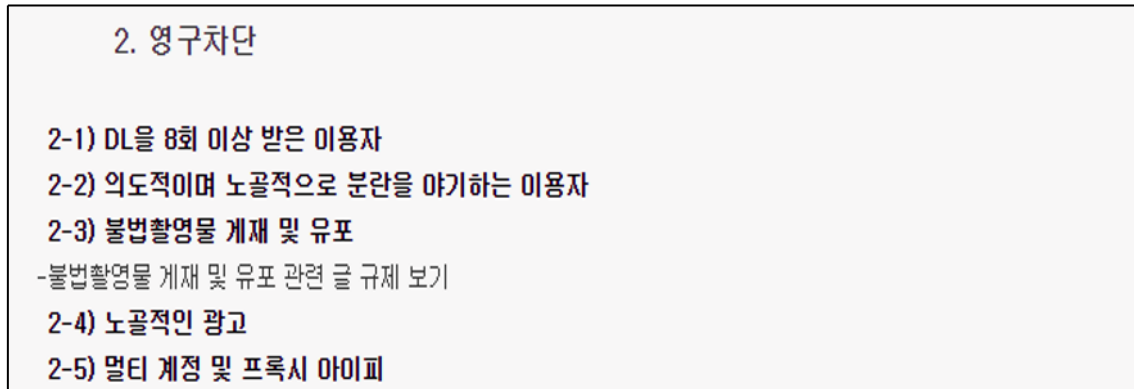
※ 대상기간 : '25.1.1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

구분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신고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등	-	-	-	-	-	-	-	-	-	-	-	-	-
		기관·단체	-	1	-	-	1	6	1	-	-	-	-	1	10
		소계	-	1	-	-	1	6	1	-	-	-	-	1	10
	신고사유	성적 불법촬영물	-	1	-	-	1	3	1	-	-	-	-	-	6
		성적 허위영상물	-	-	-	-	-	3	-	-	-	-	-	-	3
		아동청소년 성착취물	-	-	-	-	-	-	-	-	-	-	-	-	1
처리결과	삭제·접속차단		-	1	-	-	1	6	1	-	-	-	-	1	10
	방심위 심의요청	삭제·접속차 단	-	-	-	-	-	-	-	-	-	-	-	-	-
		각하·해당없 음	-	-	-	-	-	-	-	-	-	-	-	-	-
	소계		-	1	-	-	1	6	1	-	-	-	-	-	1
비고															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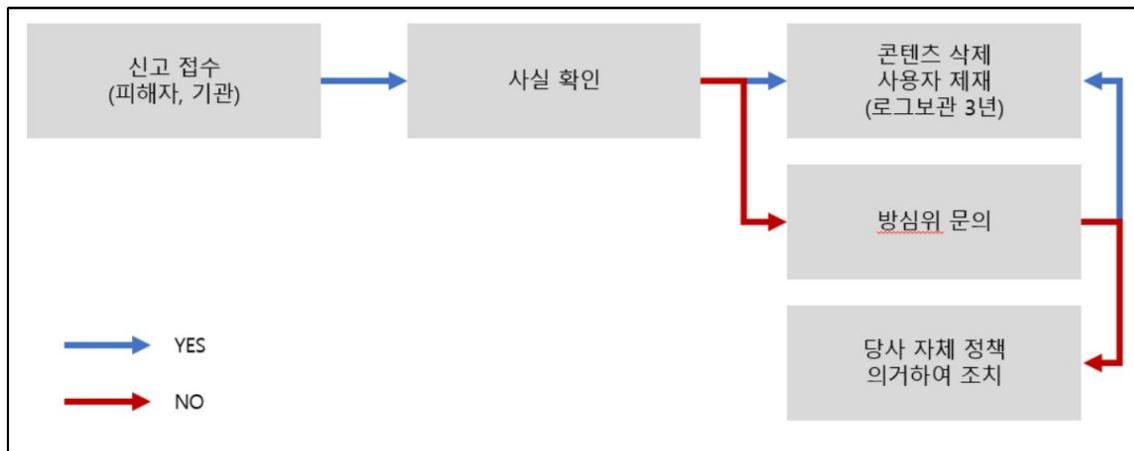
○ 관련 규정

- 불법촬영물 관련 사이트 규정
- 불법촬영물 게재 및 유포 시 사이트 영구차단



○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

- 신고 및 삭제 요청 처리 프로세스
-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및 삭제 요청 처리 프로세스



○ 기타 운영관련 사항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분	성명	부서	직책	지정일
정	이○○	담당부서	책임자	
부	박○○	담당부서	실무자	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 (수료일)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법정교육	2025-09-02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	책임자	2	방미통위
법정교육	2025-09-05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	실무자	2	방미통위

발급번호 : 2025-il-081-0001

교육 수료증

성 명 :

소 속 : ㈜동아닷컴

교육과정 :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
교육기간 : 2025. 08. 28. ~ 2025. 09. 02.

위 사람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
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
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5. 09. 02.

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발급번호 : 2025-il-081-0003

교 육 수 료 증

성 명 :

소 속 : ㈜동아닷컴

교육과정 :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

교육기간 : 2025. 08. 21. ~ 2025. 09. 05.

위 사람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
관한 법률」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
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
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5. 09. 05.

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